
제2024-2회

**중앙운영위원회
별첨자료**

2024. 1. 22.

심의안건 별첨자료

보고안건 제9호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자치규칙
전부개정 보고**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KAIST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반도체시스템공학과(이하 "본과"라 한다) 내의 자치를 이루어 내며, 구성원들의 지성적 이해와 요구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위)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 산하 자치기구이다.

제4조(회원)

- 1 총학생회 회원 중 주전공이 반도체시스템공학과인 사람은 본회의 회원이 된다
 1. 회원은 제 5 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2. 회원 중 제 5 조제 8 항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제 5 조제 4 항의 권리를 일부 제한당할 수 있다.
 3. 회원의 자치활동 참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2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회원으로 인준받을 수 있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본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KAIST 원규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받는다.
- 2 본회의 회원은 본회 운영 전반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활동을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 3 본회의 회원은 필요한 본회의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 4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5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6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저항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7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8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은 제 4 항의 권리를 일부 제한받을 수 있다.

제6조(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로 구성한다.

1. 의결기구: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운영위원회
2. 집행기구: 학생회장단, 과대표단, 집행부

제2장 의결기구

제1절 통칙

제7조(의사결정)

본회 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은 본 회칙에서 규정하는 의결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8조(위계)

- 1 본회의 의결기구는 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 운영위원회 순으로 권한이 있다.
- 2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은 하위 기구의 의사결정에 우선한다.
- 3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의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제9조(의장)

- 1 본회 의결기구의 의장은 본회 회칙 및 세칙, 의결을 통해 다르게 정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이하 "학생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2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3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 4 학생회장이 사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부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 5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모두 사고 또는 궐위된 때 또는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내부호선된 1 인이 그 직을 대신하며, 해당 의결기구 개회 직후 해당 의결기구의 재인준을 받는다.

제2절 학생총회

제10조(지위)

학생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1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2조(형식)

총회는 본회 회원의 연석의 형식으로 한다.

제13조(권한)

- 1 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 2 비상학생총회는 학생사회의 긴급한 결정을 요하는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 3 비상학생총회는 학생회장단 탄핵안을 의결할 수 없다.

제14조(의장)

- 1 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학생회장이 사고 또는 궐위될 경우 부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 3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모두가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 운영위원회에서 내부호선된 운영위원 중 1 인이 그 직을 대신하며, 총회 개회 직후 총회의 재인준을 받는다.

제15조(소집)

- 1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의장이 72 시간 이내 소집한다.
 1. 본회 회원 5 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3 분의 2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총회 의장은 개회 72 시간 전에 총회의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2 비상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1. 본회 회원 10 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2 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비상학생총회 의장은 개회 24시간 전에 비상학생총회의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3 의장이 제 2 항을 위반하여 학생총회 또는 비상학생총회를 소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소집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안건 상정)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1. 본회 회원 5 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2.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3 분의 2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비상학생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1. 본회 회원 10 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2.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2 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제17조(의사의결정족수)

- 1 총회는 본회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본회 회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비상학생총회는 비상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3 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본회 회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결과공고)

총회의 의장은 폐회 후 72시간 이내에 결과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3절 학생총투표

제19조(지위)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총투표(이하 "총투표"라 한다)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 이를 통한 의결은 학생총회의 의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0조(투표권)

본회 회원은 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제21조(형식)

총투표는 본회 회원의 투표의 형식으로 한다.

제22조(권한)

총투표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1. 학생회장단 탄핵안 등 본회 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
2. 그 밖에 본회 활동과 관련한 중대한 사항
3. 단, 학생총투표는 본회의 존립과 관련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3조(시행)

- 1 총투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총회 의장이 72 시간 이내 시행한다.
 1. 운영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가 있을 때
 2.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가 있을 때
 3. 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되었을 때
 4. 그 밖에 본회의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2 총회 의장은 시행 5 일 전에 총투표의 시행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3 총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총회 의장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4 투표관리위원회는 총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4조(안건 상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학생총투표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2.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3. 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
4. 제 23 조제 1 항제 4 호에 따른 의장의 시행요구와 함께 의장이 안건을 발의한 경우

제25조(성립·의결 요건)

- 1 총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 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명부상 총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1. 의장은 제 23 조 2 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 명부상 총투표자 수를 함께 공고해야한다.

제26조(결과공고)

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완료 이후 72시간 이내에 총회 의장이 투표율과 결과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한다.

제27조(이의제기)

총투표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투표관리위원회에 투표 종료 후 72시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투표관리위원회는 해당 이의제기를 이의제기 기준 48시간 이내에 심의·의결해 공고한다.

제4절 운영위원회

제28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총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제29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제30조(운영위원)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이 된다.

1. 학생회장
2. 부학생회장
3. 1학년 과대표 1인
4. 1학년 부과대표 1인
5. 2학년 과대표 1인
6. 2학년 부과대표인 1인
7. 3학년 과대표 1인
8. 3학년 부과대표 1인
9. 4학년 과대표 1인
10. 4학년 부과대표 1인

2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과대표 혹은 부과대표를 겸직할 수 있다.

- 3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으로 인준받을 수 있다.
- 4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학생회장을 대신하여 본회의 대표자의 자격을 가지고 외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31조(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1. 본회의 제반 사항
2. 본회 및 본회 기구의 사업계획 및 예산
3. 본회 및 본회 기구의 사업보고 및 결산
4. 학생회칙 및 세칙 제정안 및 개정·폐지안
5. 학생회비 인상·인하안
6. 학생회장단 및 과대표단 탄핵안 발의안
7.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단체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8. 본회 차원의 대외적 협의 및 활동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
10. 학생회칙 및 세칙의 유권해석안

제32조(의장)

- 1 운영위원회 의장은 학생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운영위원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학생회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내부호선된 1 인이 그 직을 대신하며, 운영위원회 개회 직후 운영위원회의 재인준을 받는다.

제33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나눈다.

- 1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매주 의장이 소집한다.

- 2 운영위원회 임시회의는 의장 또는 운영위원 3 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 3 의결 안건 및 보고 사항이 없을 경우에 의장은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운영위원회 의장은 개회 12 시간 전에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34조(안건 상정)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1. 의장이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2.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3 분의 1 이상의 연서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3. 운영위원회 의장이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발의한 경우

제35조(안건의 상정 시기)

안건의 상정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 34 조제 1 호부터 제 2 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제 33 조에 따라 소집되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본회 회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2. 제 34 조제 3 호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안건발의 일자로부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소집이 공고되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본회 회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제36조(겸직)

겸직이 발생할 경우에 재적 인원, 재석 인원, 의결권의 중복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37조(의결정족수)

- 1 운영위원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서면결의로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 31 조제 4 호
2. 제 31 조제 5 호
3. 제 31 조제 6 호
4. 제 31 조제 7 호
5. 제 31 조제 8 호

제38조(결과공고)

의장은 폐회 후 72시간 이내에 결과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39조(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1. 본회에 지정되는 학부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1. 이때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높은 학년의 과대표 순으로 우선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집행기구

제1절 학생회장단

제40조(지위)

- 1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 2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고, 학생회장이 권한을 위임한 때에 그 권한을 수행한다.

제41조(임기)

- 1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전년도 1 분기 초 총학생회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 후부터 당해 연도 1 분기 초 총학생회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 이전까지로 한다. 다만, 보임(補任)되거나 개선(改選)된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임기 시작부터 1 분기 초 총학생회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 이전까지로 하며, 임기 시작은 당선 확정

공고 등 본회의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

- 2 학생회장단이 본회 회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사퇴한 것으로 본다.

제42조(신분보장)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임기만료나 총회에서의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3조(업무 및 권한)

- 1 학생회장은 본회 의결기구를 운영하고 의장이 된다.
- 2 학생회장은 본회의 대내외 활동을 관장한다.
- 3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의견을 알리며,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담론을 형성할 의무를 가진다.
- 4 학생회장은 본회 집행부를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원 및 각 부서의 장을 임면(任免)한다.

제44조(의무)

- 1 학생회장단은 본회 회원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학생회장단은 본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3 학생회장단은 본회 및 본회 자치기구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4 학생회장단은 후임 학생회장단으로의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차후 업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45조(권한대행)

1. 학생회장이 사고 또는 궐위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학생회장 또는 운영위원회의결로 인준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2. 부학생회장이 사고 또는 궐위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인준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46조(검직금지)

학생회장단은 다음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총학생회장단
2.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3. 타 학부·학과 학생회 학생회장(단)
4. 새내기학생회 회장단
5.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6. 각 자치기구 비례 대의원

제47조(선거)

학생회장단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48조(탄핵)

- 1 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은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둘 중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 2 학생회장단 탄핵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해 총회 또는 총투표로 발의할 수 있다.
 1.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
 2.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
- 3 탄핵안이 발의된 때에는 운영위원 중 내부호선한 1인 임시의장으로 하여 탄핵안 발의 72시간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탄핵안을 총회 또는 총투표로 발의한다. 내부호선으로 선출한 임시의장은 운영위원회 개회 직후 운영위원회의 재인준을 받는다.
- 4 학생회장단 탄핵안 발의 시 학생회장단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때, 제 3항에서 내부호선된 사람이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학생회장단 탄핵안이 총회 또는 총투표에서 부결된 경우에 학생회장단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제2절 과대표단

제49조(지위)

- 1 과대표는 본회 각 학년 회원들을 대표한다.
- 2 학년별 부과대표 1 인은 과대표를 보좌하며 과대표가 사고 또는 궐위된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0조(구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대표단이 된다.

1. 1 학년 과대표
2. 1 학년 부과대표
3. 2 학년 과대표
4. 2 학년 부과대표
5. 3 학년 과대표
6. 3 학년 부과대표
7. 4 학년 과대표
8. 4 학년 부과대표

제51조(임기)

- 1 학년별 과대표단의 임기는 당선 확정 공고 이후부터 차년도 봄학기 개강일 전일 전까지로 한다.
- 2 진급에 따른 학년 변경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과대표단이 본회 회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사퇴한 것으로 본다.

제52조(소속 학년)

- 1 과대표와 부과대표의 소속 학년은 통상의 학년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 2 통상과 벗어난 형태의 학년 구분 사례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3조(학생회장단의 검임)

1. 학생회장이 속한 학년의 과대표가 없을 경우에 학생회장은 그 학년도 과대표를 검임한다.
2. 부학생회장이 속한 학년의 과대표가 없을 경우에 학생회장은 그 학년도 과대표를 검임한다. 다만,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학년이 같을 경우 학생회장이 과대표를 우선 검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4조(선거)

- 1 학년별 과대표, 부과대표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 2 본회 회원 중 제 5 조제 5 항에 따라 피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은 소속 학년 과대표, 부과대표 선거에 입후보할 권리를 가진다.
- 3 본회 회원 중 제 5 조제 5 항에 따라 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은 소속 학년의 과대표, 부과대표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4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개표 결과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과대표 당선자로 하고, 나머지 후보자 중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부과대표 당선자로 한다. 다만, 단일 후보의 경우에는 찬성 투표가 유효투표 수의 과반일 경우에 당선으로 한다.
- 5 운영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48 시간 이내에 본회에 선거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 6 본회 회원은 당선공고 후 72 시간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이를 본회 회칙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운영위원회가 당선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 54 조를 준용하여 재선거를 시행한다.
- 7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고 선거 제반업무가 종료되었을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당선자의 당선을 확정한다.
- 8 그 밖에 과대표단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55조(탄핵)

- 1 과대표단에 대한 탄핵은 과대표 및 부과대표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둘 중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 2 과대표단 탄핵안은 선거권을 가진 해당 학년 회원 5 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3 운영위원회 의장은 과대표단 탄핵안 발의 10 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과대표단 탄핵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4 과대표단 탄핵안 발의 시 과대표단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때, 운영위원회 의결로 인준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과대표단 탄핵안이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에 과대표단은 직무에 복귀한다.
- 5 학생회장단이 과대표단을 검직할 경우, 학생회장단 직에서 탄핵될 때에 과대표단 직도 함께 탄핵된 것으로 본다.

제56조(보궐)

- 1 과대표 또는 부과대표가 사퇴하거나 탄핵되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사퇴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시행할 수 있다.
- 2 과대표단의 보궐선거는 제 54 조에 따라 시행한다.

제3절 집행부

제57조(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제58조(구성)

- 1 집행부원은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분된다.
 1. 운영위원은 당연직 집행부원이 된다.
 2. 임명직 집행부원은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학생회장이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2 집행부의 국서 체계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학생회장이 정한다.

제59조(업무 및 권한)

- 1 집행부는 본회 업무 전반에 대해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다.

- 2 집행부는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업무를 집행한다.

제60조(운영)

전반적인 운영은 의결기구 및 학생회장의 방향에 따른다.

제4절 비상대책위원회

제61조(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집행부를 대체하고 본회의 최고집행기구
가 된다.

1.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
2. 학생회장단 두 명 모두가 사퇴 또는 탄핵되고, 해당 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180 일이 넘지 않을 때

제62조(구성)

- 1 운영위원회는 제 61 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공고하고, 공고 후 72 시간 이내에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 2 운영위원회는 모집공고 후 168 시간 이내에 비상대책위원 지원자 및 운영위원 중
비상대책위원을 선발하고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63조(업무 및 권한)

- 1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집행부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 2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행부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3 비상대책위원회의 업무 범위 및 운영 절차가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64조(임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구성된 이후부터 제79조에 따른 당선 확정 공고 이전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65조(위원장)

- 1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제 45 조에 따라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운영위원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권한을 대행할 운영위원이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은 본회 회원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위원장으로 인준한다.
- 2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3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인준된 이후부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까지로 한다.

제4장 선거

제66조(선거)

본회의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67조(선거권)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제68조(피선거권)

본회의 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9조(선거시기)

선거는 매년 가을학기 중에 실시한다. 다만, 선거가 무산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시기를 정한다.

제70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

- 1 본회의 학생회장단 선거는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밖의 제반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 2 다만, 제 1 항에 따른 선거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선거를 시행할 수 있다.

제71조(선거관리위원회)

- 1 제 70 조제 2 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학생회장의 선거를 시행할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 2 선관위는 운영위원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 3 선관위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내부호선한다.
- 4 선관위 위원은 해당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 5 선관위는 학생회장단 선거의 제반 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의결 권한을 갖는다.
- 6 선관위는 학생회장단의 당선 확정을 공고한 후에 해산한다.

제72조(선거기간)

- 1 선거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일정에 따라 진행한다.
- 2 선거기간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선거시행공고일
 2. 후보등록기간
 3. 선거운동기간
 4. 투표일
 5. 개표일
- 3 선거는 후보등록기간을 선거시행공고일 이후 72 시간 이상 120 시간 이내로 하며, 선거운동기간을 후보 공고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을 포함하여 7일 이상, 투표일을 48시간 이내, 개표일을 투표종료 직후로 하여 선거기간을 정한다.

제73조(후보등록)

- 1 학생회장단 후보는 학생회장 후보 1 인과 부학생회장 후보 1 인으로 구성된다.
- 2 피선거권을 갖는 사람 중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들은 후보등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후보등록서류
 2. 성적증명서 등 재학기간 및 학사 경고 횟수를 밝히는 서류
 3.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징계 사유와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후보등록서류는 후보의 이름, 사진 및 선거공약을 포함하여야 한다.
- 4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후보의 후보등록서류를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24 시간 이내에 선거권을 가진 학생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74조(선거방법)

- 1 선거권자의 40% 이상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개표 결과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단일 후보의 경우에는 찬성 투표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일 경우에 당선으로 한다.
- 2 운영위원회는 선거일 20 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 3 그 밖에 선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 의결로 정한다.

제75조(재선거)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당선 후보를 확정할 수 없어 재선거를 시행한다.
 1. 학생회장단 선거의 후보자가 등록되지 아니하였을 때
 2.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3. 운영위원회가 당선을 취소하였을 때
- 2 그 밖에 재선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76조(보궐선거)

- 1 학생회장단이 사퇴하거나 탄핵되었을 때에 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사퇴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남은 임기가 180 일 이상인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사퇴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보궐선거는 제 70 조부터 제 74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77조(당선공고)

선관위는 개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대중에게 선거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8조(이의제기)

- 1 본회 회원은 학생회장단 선거의 당선공고 이후 72 시간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이를 본회 회칙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 2 당선이 취소된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75 조에 따라 30 일 이내에 재선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79조(당선확정)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고 선거 제반업무가 종료되었을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당선자의 당선을 확정한다.

제5장 재정

제80조(재원)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학생회칙」 제166조에 따른 기층기구회계 지원금, 학과 지원금, 수익 사업 수입,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81조(회계)

본회의 회계 운용은 매 학기 개강 후 첫 번째 주에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다.

제8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 및 집행 분기는 「학생회칙」 제165조를 따른다.

제83조(회비)

- 1 본회의 회원은 가입 후 당해년도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금액의 학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납부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학사과정 졸업 시까지 제 5 조제 4 항에서 명시하는 학생회비 납부에 따른 권리가 보장된다.

제84조(관리)

- 1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이익과 회원 전체의 권리 증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2 본회의 재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제6장 회칙 개정

제85조(발의)

1. 회칙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해 발의된다.
 1.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본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2. 현행 학생회칙
 3. 개정 학생회칙안
 4. 신·구문대조표 및 해설
 5.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제86조(공고)

회칙개정안이 발의되면 학생회장은 발의된 회칙개정안을 72시간 이내에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87조(의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3일 이후 14일 이내에 학생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88조(공포 및 발효)

- 1 회칙개정안이 학생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면 학생회장은 이를 72 시간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1. 단, 학생회장이 1항에 정한 시간까지 공포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포할 수 있다.
- 2 개정 회칙 공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2. 신·구문 대비표 및 해설
 3.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4. 회칙개정안 찬성 회원 또는 운영위원 명단
- 3 개정된 회칙은 공포 후 5 일 후에 발효된다. 단, 회칙 개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유예기간이 지정된 경우 유예기간 이전까지 전부 또는 일부 개정 전 회칙이 효력을 발한다.

제7장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 후 즉시 발효된다.

제2조(적용례)

- 1 제1대 학생회장단에 한하여 임기를 당선 확정 공고 이후부터 차년도 1분기 초 총학생회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 이전까지로 한다.
- 2 이전 회칙을 통해 선출된 과대표단, 학생회장단 및 임명된 집행부원은 이 회칙을 통해 선출 및 임명된 것으로 본다.

3 이 회칙에 위배 되지 않는 세칙 및 의결기구의 의결은 그 효력을 지속한다.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p> <p>1. 본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u>KAIST 규정</u>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받는다.</p> <p>(중략)</p> <p>8. <u>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u></p>	<p>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p> <p>1. 본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u>KAIST 원규</u>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받는다.</p> <p>(후략)</p> <p>8. <u>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은 제4항의 권리를 일부 제한받을 수 있다.</u></p>
<p>제9조(의장)</p> <p>1. <u>본회의 의결기구의 의장은 본회 회칙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이하 '학생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u></p> <p>(중략)</p> <p>5. <u>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모두 사고 또는 궐위된 때 또는 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내부 호선된 1인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의결기구 개최 직후 해당 의결기구의 재 인준을 받아 해당의결기구의 의장직을 대신한다</u></p>	<p>제9조(의장)</p> <p>1.<u>본회 의결기구의 의장은 본회 회칙 및 세칙, 의결을 통해 다르게 정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이하 '학생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u></p> <p>(중략)</p> <p>5. <u>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모두 사고 또는 궐위된 때 또는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내부호선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하며, 해당 의결기구 개최 직후 해당 의결기구의 재인준을 받는다.</u></p>
<p>제14조(의장)</p> <p>1. <u>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u></p> <p>2. 학생회장이 사고 또는 궐위될 경우 부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p> <p>3. <u>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모두 사고 또는 궐위된 때 또는 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내부 호선된 1인이 그</u></p>	<p>제14조(의장)</p> <p>1.<u>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u></p> <p>2.학생회장이 사고 또는 궐위될 경우 부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p> <p>3.<u>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모두가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학생</u></p>

<p><u>직무를 대신하며, 총회 개회 직후 총회의 재인준을 받는다.</u></p>	<p><u>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 운영위원회에 서 내부호선된 운영위원 중 1인이 그 직을 대신하며, 총회 개회 직후 총회의 재인준을 받는다.</u></p>
<p>제15조(소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의장이 <u>24 시간 이내 소집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회 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의장은 개회 72 시간 전에 총회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3. <u>의장이 제 1 항을 위반하여 학생총회를 소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소집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u> 4. <u>비상총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의장이 24 시간 이내 소집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본회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u> 2. <u>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2분의 2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u> 5. <u>총회 의장은 개회 24 시간 전에 총회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u> 	<p>제15조(소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의장이 <u>72 시간 이내 소집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총회 의장은 개회 72 시간 전에 총회의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p><u><신설></u></p> <p><u><삭제></u></p> 2. 비상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u>2분의 1 이상의 연서</u>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비상학생총회 의장은 개회 24 시간 전에 비상학생총회의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3. 의장이 제 2 항을 위반하여 학생총회 또는 비상학생총회를 소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소집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p>한다.</p> <p>1 의장이 제 4 항을 위반하여 비상학생총회를 소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소집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p>	
<p>제23조(시행)</p> <p>1 총투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총회 의장이 120 시간 이내 시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영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가 있을 때 2.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가 있을 때 3. 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되었을 때 4. 그 밖에 본회의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p>2 총회 의장은 시행 7 일 이전에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p> <p>3 총투표가 시행이 결정되면 총회 의장은 투표관리 위원회를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 회장단 탄핵안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열거된 총회 의장의 권한 일부를 투표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p>4 투표관리위원회는 총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p>	<p>제23조(시행)</p> <p>1 총투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총회 의장이 72 시간 이내 시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영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가 있을 때 2.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가 있을 때 3. 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되었을 때 4. 그 밖에 본회의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p>2 총회 의장은 시행 5 일 전에 총투표의 시행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p> <p>3 총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총회 의장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p> <p><삭제></p> <p><삭제></p> <p>4 투표관리위원회는 총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p>

<p>제31조(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회의 제반 사항 2. 본회 및 본회 기구의 사업계획 및 예산 3. 본회 및 본회 기구의 사업보고 및 결산 4. 학생회칙 및 세칙 제정안 및 개정·폐지안 5. 학생회비 인상·인하안 6. 학생회장단 및 과대표단 탄핵안 발의안 7.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단체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8. 본회 차원의 대외적 협의 및 활동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총회의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제반 사항 	<p>제31조(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회의 제반 사항 2. 본회 및 본회 기구의 사업계획 및 예산 3. 본회 및 본회 기구의 사업보고 및 결산 4. 학생회칙 및 세칙 제정안 및 개정·폐지안 5. 학생회비 인상·인하안 6. 학생회장단 및 과대표단 탄핵안 발의안 7.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단체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8. 본회 차원의 대외적 협의 및 활동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총회의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제반 사항 10. <u>학생회칙 및 세칙의 유권해석안</u> <추가>
<p>제32조(의장) 1. 운영위원회 의장은 학생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운영위원으로 한다. (후략)</p>	<p>제32조(의장) 1. 운영위원회 의장은 학생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운영위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후략)</p>
<p>제33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정기회는 주 1회로 한다.</u> 2. <u>임시회는 의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u> 3. <u>의장은 운영위원회 소집 12시간 전에 소집을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u> 4. <u>의결 안건 및 보고 사항이 없을 경우 의장의 권한으로 정기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u> 	<p>제33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나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매주 의장이 소집한다.</u> 2 <u>운영위원회 임시회의는 의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u> 3 <u>의결 안건 및 보고 사항이 없을 경우에 의장은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u> 4 <u>운영위원회 의장은 개회 12시간 전에</u>

	<u>운영위원회의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u>
제38조(결과공고) 의장은 폐회 후 <u>48시간 이내에</u> 결과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결과공고) 의장은 폐회 후 <u>72시간 이내에</u> 결과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39조(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1. 본회에 지정되는 학부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1. 이때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높은 학년의 과대표 <u>순으로 우선으로 하여 정한다.</u>	제39조(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1. 본회에 지정되는 학부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1. 이때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높은 학년의 <u>과대표 순으로 우선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u>
제46조(겸직금지) 학생회장은 다음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총학생회장단 2.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3. <u>타 학부·학과 학생회 학생회장(단) 및 이에 준하는 입시집행체계의 장</u> 4. 새내기학생회 회장단 5.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6. 각 자치기구 비례 대의원	제46조(겸직금지) <u>학생회장단은</u> 다음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총학생회장단 2.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3. <u>타 학부·학과 학생회 학생회장(단)</u> 4. 새내기학생회 회장단 5.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6. 각 자치기구 비례 대의원
제48조(탄핵) (전략) 3. 탄핵안이 발의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내부 호선한 1인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탄핵안 발의 3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탄핵안을 총회 또는 총투표로 발의한다. <u>4. 학생회장단 혹은 학생회장 혹은 부학생회장</u> <u>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탄핵안의 대상</u> <u>이 된 사람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이때, 운</u> <u>영위원 중 내부 호선된 1인이 그 직무를 대행</u> <u>한다. 탄핵안이 총회 또는 총투표에서 부결된</u>	제48조(탄핵) (전략) 3. 탄핵안이 발의된 때에는 운영위원 중 내부 호선한 1인 임시의장으로 하여 탄핵안 발의 72시간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탄핵안을 총회 또는 총투표로 발의한다. <u>내부 호선으로 선출한 임시의장은 운영위원회 개회 직후 운영위원회의 재인준을 받는다.</u> 4. 학생회장단 탄핵안 발의 시 학생회장단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때, 제3항에서 내부 호선된 사람이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학생회장단 탄핵안이 총회 또는 총투표에서 부결된

<p><u>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u></p>	<p>경우에 학생회장단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p>
<p>제52조(소속 학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대표와 부과대표의 <u>소속 학년 통상의 학년</u>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2. 통상과 벗어난 형태의 학년 구분 사례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p>제52조(소속 학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대표와 부과대표의 <u>소속 학년은 통상의 학년</u>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2. 통상과 벗어난 형태의 학년 구분 사례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p><u>제53조(학생회장의 겸임)</u> <u>학생회장이 속한 학년의 과대표가 없을 경우에 학생회장은 그 학년도 과대표를 겸임한다.</u></p>	<p><u>제53조(학생회장단의 겸임)</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회장이 속한 학년의 과대표가 없을 경우에 학생회장은 그 학년도 과대표를 겸임한다. 2. 부학생회장이 속한 학년의 과대표가 없을 경우에 학생회장은 그 학년도 과대표를 겸임한다. 다만,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학년이 같을 경우 학생회장이 과대표를 우선 겸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p><u>제54조(선거)</u> (전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과대표 선거는 해당 학년 과반수 투표 시 <u>유효 투표로 하며, 개표 결과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과대표 당선자로 한다. 만약 단일 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 상황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u> 5. 부과대표 선거는 해당 학년 과반수 투표 시 <u>유효 투표로 하며, 개표 결과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과대표 당선자로 한다. 만약 단일 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 상황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u> 6. 운영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48시간 이내에 회원에게 선거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후략) 	<p>제54조(선거) (전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u>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 시 유효투표로 하며, 개표 결과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과대표 당선자로 하고, 나머지 후보자 중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부과대표 당선자로 한다. 다만, 단일 후보의 경우에는 찬성 투표가 유효 투표 수의 과반일 경우에 당선으로 한다.</u> <삭제> 5. 운영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48시간 이내에 본회에 선거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후략)
<p><u>제55조(탄핵)</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탄핵안은 과대표와 부과대표 각각을 대상으로 발의할 수 있다.</u> 	<p>제55조(탄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과대표단에 대한 탄핵은 과대표 및 부과대표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둘 중 한</u>

<p>2. <u>과대표 혹은 부과대표에 대한 탄핵안</u>은 선거권을 가진 해당 학년 회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p> <p>3. 운영위원회 의장은 <u>과대표 혹은 부과대표에 대한 탄핵안 발의 10일 이내</u>에 운영위원회를 소집 하여 과대표단 탄핵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p> <p>(후략)</p>	<p>명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p> <p>2. <u>과대표단 탄핵안</u>은 선거권을 가진 해당 학년 회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p> <p>3. 운영위원회 의장은 <u>과대표단 탄핵안 발의 10일 이내</u>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과대표단 탄핵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p> <p>(후략)</p>
<p>제62조(구성)</p> <p>1 운영위원회는 제6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공고하고, <u>공고 후 120시간 이내</u>에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하여야 한다.</p> <p>2. 운영위원회는 모집공고 <u>후 240시간 이내</u>에 비상대책위원 지원자 및 운영위원 중 비상대책위원을 선발하고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p>	<p>제62조(구성)</p> <p>1. 운영위원회는 제6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공고하고, <u>공고 후 72시간 이내</u>에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하여야 한다.</p> <p>2. 운영위원회는 <u>168시간 이내</u>에 비상대책위원 지원자 및 운영위원 중 비상대책위원을 선발하고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p>
<p>제64조(임기)</p> <p>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구성된 이후부터 <u>제 41조에 따른 선거기간 종료일 3일 후까지로 한다.</u> 다만,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p>	<p>제64조(임기)</p> <p>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구성된 이후부터 <u>제 79조에 따른 당선 확정 공고 이전까지로 한다.</u> 다만,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p>
<p>제84조(관리)</p> <p>1.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이익과 회원 전체의 권리 증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p> <p>2. 본회의 재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한다.</p> <p><u>3. 각 학기의 회비는 1인당 30,000원을 넘길 수 없다.</u></p>	<p>제84조(관리)</p> <p>1.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이익과 회원 전체의 권리 증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p> <p>2. 본회의 재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한다.</p> <p><삭제></p>
<p>제87조(의결)</p> <p>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u>7일 이후 20일 이내</u>에 학생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p>	<p>제87조(의결)</p> <p>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u>3일 이후 14일 이내</u>에 학생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p>

제7장부칙

제2조(적용례)

1. 제1대 학생회장단 선거의 경우에는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에서 제71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제1대 학생회장단에 한하여 임기를 당선 확정 공고 이후부터 차년도 1분기 초 총학생회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 이전까지로 한다.

제7장부칙

제2조(적용례)

<삭제>

- 1 제 1 대 학생회장단에 한하여 임기를 당선 확정 공고 이후부터 차년도 1 분기 초 총학생회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 이전까지로 한다.
- 2 이전 회칙을 통해 선출된 과대표단, 학생회장단 및 임명된 집행부원은 이 회칙을 통해 선출 및 임명된 것으로 본다. <추가>
- 3 이 회칙에 위배 되지 않는 세칙 및 의결기구의 의결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추가>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목적 및 경위

1. 개정 목적 및 경위

처음 제정된 학생회칙의 자구 및 체계, 문구상의 오류를 수정하고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학생회칙의 문구를 수정하고 더욱 분명히 밝힘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2. 조문별 개정 목적 및 경위

현 행	개 정 안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u>KAIST 규정</u> 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받는다. (중략) 8. <u>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u>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u>KAIST 원규</u> 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받는다. (후략) 8. <u>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은 제4항의 권리를 일부 제한받을 수 있다.</u>
목적 및 경위	공식적으로 KAIST 규정이 아닌 KAIST 원규가 맞는 표현이라 수정을 하였고, 더불어 8조에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재함.

제9조(의장) 1. <u>본회의 의결기구의 의장은 본회 회칙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이하 '학생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u> (중략) 5. <u>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모두 사고 또는 궐위된 때 또는 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u>	제9조(의장) 1. <u>본회의 의결기구의 의장은 본회 회칙 및 세칙, 의결을 통해 다르게 정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이하 '학생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u> (중략) 5. <u>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모두 사고 또는 궐위된 때 또는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 운영</u>
---	--

<p><u>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내부 호선된 1인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의결기구 개최 직후 해당 의결기구의 재인준을 받아 해당 의결기구의 의장직을 대신한다.</u></p>	<p><u>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내부 호선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하며, 해당 의결기구 개최 직후 해당 의결기구의 재인준을 받는다.</u></p>
<p>목적 및 경위</p>	<p>기존 회칙에서 특별한 규정의 범위를 회칙 및 세칙, 의결을 통해 다르게 정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로 구체적으로 수정하여 보다 특별한 규정의 범위를 명확히 밝혔으며, 5항의 경우 기존 회칙에 의장직을 대신함이 두 번 언급되어 자구를 정리함.</p>

<p>제14조(의장)</p> <p>1. <u>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u></p> <p>2. 학생회장이 사고 또는 궐위될 경우 부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p> <p>3. <u>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모두 사고 또는 궐위된 때 또는 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내부 호선된 1인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총회 개최 직후 총회의 재인준을 받는다.</u></p>	<p>제14조(의장)</p> <p>1. <u>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u></p> <p>2. 학생회장이 사고 또는 궐위될 경우 부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p> <p>3. <u>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모두가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 운영위원회에서 내부 호선된 운영위원 중 1인이 그 직을 대신하며, 총회 개최 직후 총회의 재인준을 받는다.</u></p>
<p>목적 및 경위</p>	<p>1항은 제9조에 의장 규정에 따라 해석하도록 정의하였으며, 더불어 3항의 경우 탄핵안 및 궐위 사고 모두가 포함됨을 보다 분명히 밝히고자 수정함.</p>

<p>제15조(소집)</p> <p>1.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의장이 <u>24 시간 이내 소집한다.</u></p> <p>1. 본회 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p> <p>2.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p>	<p>제15조(소집)</p> <p>1.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의장이 <u>72 시간 이내 소집한다.</u></p> <p>1. 본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p> <p>2.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p>
--	--

<p>요구가 있을 때</p> <p>2. 의장은 개회 72 시간 전에 총회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p> <p>3. <u>의장이 제 1 항을 위반하여 학생총회를 소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소집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u></p> <p>4. <u>비상총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의장이 24 시간 이내 소집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본회 회원의 10 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u> 2. <u>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2 분의 2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u> <p>5. <u>총회 의장은 개회 24 시간 전에 총회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u></p> <p>6. 의장이 제 4 항을 위반하여 비상학생총회를 소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소집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p>	<p>3. 총회 의장은 개회 72 시간 전에 총회의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p> <p><u><신설></u></p> <p><u><삭제></u></p> <p>2. 비상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회 회원 10 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u>2 분의 1 이상의</u>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비상학생총회 의장은 개회 24 시간 전에 비상학생총회의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p>3. 의장이 제 2 항을 위반하여 학생총회 또는 비상학생총회를 소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소집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p>
<p>목적 및 경위</p>	<p>제1항은 총회를 진행함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여 시간을 72시간으로 수정하였고, 1항 3호를 신설하여 해당 호에 기존 제2항의 내용을 넣어 체계를 정비하였고, 더불어 2항 3호를 신설하여 해당 호에 기존 제3항의 내용을 2항에 넣어 체계를 정비함. 기존에 4항에 2분의 2 이상으로 오기재된 의결기준을 2분의 1 이상으로 바르게 수정 기재함. 더불어 제3항 및 제6항의 내용을 포괄하는 제3항을 추가하여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하는 조항이 두 번 등장하지 않도록 조치함.</p>

<p>1 총투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u>총회 의장이 120 시간 이내 시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영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가 있을 때 2.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가 있을 때 3. 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되었을 때 4. 그 밖에 본회의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p>2 총회 의장은 <u>시행 7일 이전에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u></p> <p>3 <u>총투표가 시행이 결정되면 총회 의장은 투표관리 위원회를 구성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 회장단 탄핵안의 경우 <u>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u> 2. <u>운영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열거된 총회 의장의 권한 일부를 투표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u> <p>4 투표관리위원회는 총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p>	<p>1 총투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u>총회 의장이 72 시간 이내 시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영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가 있을 때 2.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가 있을 때 3. 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되었을 때 4. 그 밖에 본회의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p>2 총회 의장은 <u>시행 5일 전에 총투표의 시행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u></p> <p>3 총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총회 의장은 <u>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u></p> <p><삭제></p> <p><삭제></p> <p>4 투표관리위원회는 총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p>
<p>목적 및 경위</p>	<p>총투표의 경우 전자투표의 발전으로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시간을 72시간으로 수정하였으며, 더불어 공고 기한 역시 종전 7일에서 5일로 보다 짧게 수정하였다. 더불어 3항에서 투표관리위원회에 관하여 정의한 1호 및 2호를 삭제하고, 해당 내용이 투표관리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부분인 만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투표관리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으로 수정함.</p>

<p>제31조(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회의 제반 사항 2. 본회 및 본회 기구의 사업계획 및 예산 3. 본회 및 본회 기구의 사업보고 및 결산 4. 학생회칙 및 세칙 제정안 및 개정·폐지안 5. 학생회비 인상·인하안 6. 학생회장단 및 과대표단 탄핵안 발의안 7.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단체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8. 본회 차원의 대외적 협의 및 활동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총회의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제반 사항 	<p>제31조(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회의 제반 사항 2. 본회 및 본회 기구의 사업계획 및 예산 3. 본회 및 본회 기구의 사업보고 및 결산 4. 학생회칙 및 세칙 제정안 및 개정·폐지안 5. 학생회비 인상·인하안 6. 학생회장단 및 과대표단 탄핵안 발의안 7.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단체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8. 본회 차원의 대외적 협의 및 활동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총회의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제반 사항 10. <u>학생회칙 및 세칙의 유권해석안</u> <u><추가></u>
<p>목적 및 경위</p>	<p>학생회칙 및 세칙의 해석에 관한 시비가 있는 경우 어떤 의결기구 주체에서 해석할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부여함으로 처리함. 기존 규정에 따라 이 경우 총투표 및 학생총회에서도 학생회칙 및 세칙의 유권해석을 논의할 수 있게 됨.</p>

<p>제32조(의장) 1. 운영위원회 의장은 학생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운영위원으로 한다. (후략)</p>	<p>제32조(의장) 1. 운영위원회 의장은 학생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u>운영위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u> (후략)</p>
<p>목적 및 경위</p>	<p>1항은 제9조에 의장 규정에 따라 해석하도록 정의함.</p>

<p>제33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기회는 주 1회로 한다. 2. 임시회는 의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3. 의장은 운영위원회 소집 12시간 전에 소집을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4. 의결 안건 및 보고 사항이 없을 경우 의장의 권한으로 정기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p>제33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나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매주 의장이 소집한다.</u> 2 <u>운영위원회 임시회의는 의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u> 3 <u>의결 안건 및 보고 사항이 없을 경우에 의장은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u> 4 <u>운영위원회 의장은 개회 12 시간 전에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u>
<p>목적 및 경위</p>	<p>운영위원회의 회의의 종류와 각각의 회의에 따른 개회 주체를 보다 명확히 설명하고 밝히는 방향으로 체계 및 자구를 정비함.</p>

제38조(결과공고) 의장은 폐회 후 <u>48시간 이내</u> 에 결과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결과공고) 의장은 폐회 후 <u>72시간 이내</u> 에 결과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목적 및 경위	운영위원회 의결결과를 공고하는 시간을 늘려 사무원들의 편의 및 회의 자료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기한을 수정함.

제39조(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1. 본회에 배정되는 학부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1. 이때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높은 학년의 과대표 <u>순으로 우선으로 하여 정한다.</u>	제39조(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1. 본회에 배정되는 학부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1. 이때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높은 학년의 <u>과대표 순으로 우선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u>
목적 및 경위	1항의 입법자의 의미인 의결에 따라 정함의 뜻을 보다 살리고자 1항 1호의 자구를 일부 수정함.

제46조(겸직금지) <u>학생회장</u> 은 다음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총학생회장단 2.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3. <u>타 학부·학과 학생회</u> <u>학생회장(단) 및 이에 준하는</u> <u>임시집행체계의 장</u> 4. 새내기학생회 회장단 5.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6. 각 자치기구 비례 대의원	제46조(겸직금지) <u>학생회장단</u> 은 다음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총학생회장단 2.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3. <u>타 학부·학과 학생회</u> <u>학생회장(단)</u> 4. 새내기학생회 회장단 5.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6. 각 자치기구 비례 대의원
목적 및 경위	일반적으로 해당 장에서 학생회장단의 권리와 의무를 나열하고 있으며, 겸직을 금지하는 부분은 부학생회장 역시 해당되는 만큼 해당 문구를 수정함. 일반적으로 학과 및 학부총학생회 회칙이 학생회장단에 준하는 임시집행체계의 장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을 삭제함.

제48조(탄핵) (전략)	제48조(탄핵) (전략)
------------------	------------------

<p>3. 탄핵안이 발의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내부 호선한 1인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탄핵안 발의 3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탄핵안을 총회 또는 총투표로 발의한다.</p> <p><u>4. 학생회장단 혹은 학생회장 혹은 부학생회장</u>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탄핵안의 대상이 된 사람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이때, 운영위원 중 내부 호선된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탄핵안이 총회 또는 총투표에서 부결된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p>	<p>3. 탄핵안이 발의된 때에는 운영위원 중 내부 호선한 1인 임시의장으로 하여 탄핵안 발의 72시간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탄핵안을 총회 또는 총투표로 발의한다. <u>내부 호선으로 선출한 임시의장은 운영위원회 개회 직후 운영위원회의 재인준을 받는다.</u></p> <p>4. 학생회장단 탄핵안 발의 시 학생회장단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때, 제3항에서 내부 호선된 사람이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학생회장단 탄핵안이 총회 또는 총투표에서 부결된 경우에 학생회장단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p>
<p>목적 및 경위</p>	<p>내부 호선으로 선출한 임시의장이 운영위원회에서 재인준을 받게 하여 보다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4항에서 탄핵 대상에 대한 설명이 불분명하여 해당 내용을 회장단으로 수정함.</p>

<p>제52조(소속 학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대표와 부과대표의 <u>소속 학년 통상의 학년</u>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2. 통상과 벗어난 형태의 학년 구분 사례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p>제52조(소속 학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대표와 부과대표의 <u>소속 학년은 통상의 학년</u>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2. 통상과 벗어난 형태의 학년 구분 사례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p>목적 및 경위</p>	<p>소속 학년 통상의 학년으로 오기재된 문구를 수정하여 소속 학년은 통상의 학년 구분을 기준으로 함으로 바꾼다.</p>

<p><u>제53조(학생회장의 겸임)</u></p> <p><u>학생회장이 속한 학년의 과대표가 없을 경우에 학생회장은 그 학년도 과대표를 겸임한다.</u></p>	<p><u>제53조(학생회장단의 겸임)</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회장이 속한 학년의 과대표가 없을 경우에 학생회장은 그 학년도 과대표를 겸임한다. 2. 부학생회장이 속한 학년의 과대표가 없을 경우에 학생회장은 그 학년도 과대표를 겸임한다. 다만,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학년이 같을 경우 학생회장이 과대표를 우선 겸직함을
--	---

	원칙으로 한다. <신설>
목적 및 경위	부학생회장도 해당 학년의 과대표를 겸임할 수 있음을 밝혀 부학생회장 직위에서 과대표의 겸직 여부를 해석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p>제54조(선거) (전략)</p> <p>4. 과대표 선거는 해당 학년 과반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개표 결과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과대표 당선자로 한다. 만약 단일 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 상황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p> <p>5. 부과대표 선거는 해당 학년 과반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개표 결과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과대표 당선자로 한다. 만약 단일 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 상황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p> <p>6. 운영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48시간 이내에 회원에게 선거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후략)</p>	<p>제54조(선거) (전략)</p> <p>4.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 시 유효투표로 하며, 개표 결과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과대표 당선자로 하고, 나머지 후보자 중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부과대표 당선자로 한다. 다만, 단일 후보의 경우에는 찬성 투표가 유효 투표 수의 과반일 경우에 당선으로 한다.</p> <p><삭제></p> <p>5. 운영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48시간 이내에 본회에 선거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후략)</p>
목적 및 경위	과대표 및 부과대표를 각각 선출하는 기존 방식의 비효율을 해결하고자, 과대표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를 과대표로, 차순위 득표자를 부과대표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수정함.

<p>제55조(탄핵)</p> <p>1. 탄핵안은 과대표와 부과대표 각각을 대상으로 발의할 수 있다.</p> <p>2. 과대표 혹은 부과대표에 대한 탄핵안은 선거권을 가진 해당 학년 회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p> <p>3. 운영위원회 의장은 <u>과대표 혹은 부과대표에 대한 탄핵안 발의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u> 하여 과대표단 탄핵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후략)</p>	<p>제55조(탄핵)</p> <p>1. 과대표단에 대한 탄핵은 과대표 및 부과대표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둘 중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p> <p>2. 과대표단 탄핵안은 선거권을 가진 해당 학년 회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p> <p>3. 운영위원회 의장은 <u>과대표단 탄핵안 발의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u>하여 과대표단 탄핵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후략)</p>
---	---

목적 및 경위	과대표단 탄핵안의 대상에 관한 설명을 더욱 명료하게 함으로써 규칙을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 해석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구를 수정함.
--------------------	--

제62조(구성) 1 운영위원회는 제6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공고하고, 공고 후 120시간 이내 에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모집공고 후 240시간 이내 에 비상대책위원 지원자 및 운영위원 중 비상대책위원을 선발하고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62조(구성) 1. 운영위원회는 제6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공고하고, 공고 후 72시간 이내 에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168시간 이내 에 비상대책위원 지원자 및 운영위원 중 비상대책위원을 선발하고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목적 및 경위	공고를 짧은 기간에 진행해도 안내에 문제가 없는 과의 특성을 반영 기존 120시간(5일)에서 72시간으로 수정함. 더불어 구성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집행부 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함.

제64조(임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구성된 이후부터 제 41조에 따른 선거기간 종료일 3일 후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64조(임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구성된 이후부터 제 79조에 따른 당선 확정 공고 이전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목적 및 경위	기존에 오기재된 해석 조항인 41조를 삭제하고, 더불어 선거종료 3일 후까지 지속되는 비상대책위원회 임기를 제79조에 따른 당선 확정 공고 이전까지로 바꾸어, 민주적 선거로 꾸러진 회장단이 더 빠르게 업무에 돌입하여 더 긴 기간 학과를 대표하고 사업을 집행하도록 수정함.

제84조(관리) 1.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이익과 회원 전체의 권리 증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본회의 재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한다. 3. 각 학기의 회비는 1인당 30,000원을 넘길	제84조(관리) 1.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이익과 회원 전체의 권리 증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본회의 재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삭제>
--	--

수 없다.	
목적 및 경위	학과 학생회비의 금액을 회칙의 제약없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하도록 수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탄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제87조(의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u>7일 이후 20일 이내</u> 에 학생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87조(의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u>3일 이후 14일 이내</u> 에 학생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목적 및 경위	긴급히 수정이 필요한 학생회칙 수정안이 시의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기간을 줄임.

제7장부칙 제2조(적용례) 1. 제1대 학생회장단 선거의 경우에는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에서 제71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제1대 학생회장단에 한하여 임기를 당선 확정 공고 이후부터 차년도 1분기 초 총학생회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 이전까지로 한다.	제7장부칙 제2조(적용례) <삭제> 1 제 1 대 학생회장단에 한하여 임기를 당선 확정 공고 이후부터 차년도 1분기 초 총학생회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 이전까지로 한다. 2 이전 회칙을 통해 선출된 과대표단, 학생회장단 및 임명된 집행부원은 이 회칙을 통해 선출 및 임명된 것으로 본다. <추가> 3 이 회칙에 위배 되지 않는 세칙 및 의결기구의 의결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추가>
목적 및 경위	효력을 다한 적용례를 삭제하고, 새로운 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발생하는 기존 인원들의 임명 및 선출, 기존 회칙 하에서 만들어진 규칙 및 세칙의 지위 및 효력 유지 여부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자 적용례를 추가함.

심의안건 별첨자료

심의안건 제1호

**비상대책위원회
2023년도 하반기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안**

KAIST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2023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서



2024. 1. 22.


기구명	비상대책위원회
직위/이름	위원장/전성원

제 출 문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귀하:

본 계획서를 비상대책위원회의 2023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1월 22일

	담당자	기구장
서명	-	

I. 사업 개요

사업번호	사업명
1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2	산하위원회 운영
3	의결기구 속기
4	제휴 업체
5	학부 총학생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6	의결기구 운영
7	채용설명회·상담회 개최
8	학부 총학생회 서버 유지관리
9	P/NR 제도 도입 대응 사업
10	재수강 제도 개선 사업
11	계절학기 개설 강의 확대 사업
12	4월 총선 대응 사업
13	해오름식
14	메가박스는 KAIST가 점령

Ⅱ. 사업별 계획

1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1. 사업 개요

- | | |
|-------------|---|
| 1) 사업 방식 | 정기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사무용품을 구비함. |
| 2) 사업 준비 기간 | 하반기(상시) |
| 3) 사업 일시 | 하반기(상시) |
| 4) 사업 예산 | ₩424,731 |
| 5) 담당부서/담당자 | 재정사무국/박재은 |

2. 사업 추진 목적

1) 사업의 목적성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의 활동에 필요한 여러 물품 및 소프트웨어를 구비하고 활동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함.

3. 사업 계획

1) 사업 수혜 대상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2) 세부 사업 내용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Amazon Web Services, Github organization, Google Workspace(G-suit), 미리캔버스)를 구독함. 회의실의 노후화된 전산기기를 교체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함.

4. 사업 예상 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하반기(상시)	월별 소프트웨어 구독	
하반기(상시)	사무용품 구비	

1. 사업 개요

- 1) 사업 방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산하 위원회 운영
- 2) 사업 준비 기간 하반기
- 3) 사업 일시 하반기
- 4) 사업 예산 ₩5,000,000
- 5) 담당부서/담당자 비상대책위원장단/전성원

2. 사업 추진 목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산하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함.

3. 사업 계획

- 1) 사업 수혜 대상자

중앙선거관리위원

- 2) 세부 사업 내용

제35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활동 있어 필요한 예산 및 제반 업무 등을 지원함.

4. 사업 예상 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	----	----

2024. 1. 11.~2024. 1. 17.

중앙선거관리위원 모집

2023. 1. 23.

중앙선거관리위원 인준

21:00 개회 예정.

2023. 1.~2023.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활동
지원

1. 사업 개요

- | | |
|-------------|---|
| 1) 사업 방식 | 의결기구 서기 활동으로 의결기구 논의록(속기록)을 작성하여 결과 공고와 함께 공유함. |
| 2) 사업 준비 기간 | 하반기 |
| 3) 사업 일시 | 하반기 |
| 4) 사업 예산 | ₩200,000 |
| 5) 담당부서/담당자 | 재정사무국/박재은 |

2. 사업 추진 목적

1) 사업의 목적성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속기를 진행하고 해당 속기 담당에게 속기 비용을 지급하기 위함.

2) 사업의 필요성

의결기구운영세칙 제79조 및 제7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제76조의 회의록과 회의 결과를 공고하여야 하며, 각 회의의 의사는 속기 방법으로 기록함. 따라서 의결기구에 속기 담당을 두고 이를 기록하는 업무가 필요함.

3. 사업 계획

1) 사업 수혜 대상자

속기비 지급: 속기 담당자 (학생회비 납부자 대상)

속기 결과: 본회 회원

2) 세부 사업 내용

회의에 간사 및 서기를 두고, 회의 중에 회의의 의사를 기록하고자 함. 이를 통해 속기 업무가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고 본회 회원에게 회의의 의사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속기 담당자 모집도 비상대책위원회 내부의 위원뿐만 아닌 산하기구 및 본회 회원을 대상으로도 모집할 예정. 이를 통해 부족한 속기 담당자 지원을 극복하고 속기 업무 지연을 예방하고자 함.

4. 사업 예상 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하반기(상시)	서기 모집 및 속기비 지급	매 회의 마다 진행

1. 사업 개요

- 1) 사업 방식 업체와 제휴 계약 진행, SNS 업로드 및 목록 정리 후 드라이브에 보관/총학생회 홈페이지에 반영
- 2) 사업 준비 기간 하반기
- 3) 사업 일시 하반기
- 4) 사업 예산 ₩100,000
- 5) 담당부서/담당자 복지팀/강주흔

2. 사업 추진 목적

- 1) 학부 총학생회 명의로 외부 업체와 제휴를 맺어 본회 회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 2) 제휴 결과 및 홍보 자료를 총학생회 SNS에 업로드하며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제휴 결과를 홍보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제휴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3) 제휴 목록 정리 및 아카이빙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휴 사업을 추진하고 정리하기 위함.

3. 사업 계획

1) 사업 수혜 대상자

업체 제휴: 본회 회원 또는 본원 구성원

출장비 지급: 제휴 업체 사업 담당자

2) 세부 사업 내용

- (1) 외부 업체 제휴 계약 진행

- 제휴 계약 과정에서 대면으로 미팅하는 경우(계약 대상 업체 방문 등) 출장비가 소요될 수 있음.
- (2) 제휴 결과 및 홍보 자료 총학생회 SNS 업로드
 - 총학생회 SNS로 Facebook(KAIST 학부 총학생회 페이지) 및 Instagram(@kaistua_bridge) 활용.
- (3)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제휴 결과 반영
 - 총학생회 홈페이지 학생 복지 탭 활용(<https://student.kaist.ac.kr/web/welfare>)
- (4) 제휴 목록 정리 및 아카이빙

4. 사업 예상 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하반기(상시)	제휴 업체 탐색 및 제휴 계약 제안 검토	
하반기(상시)	제휴 논의 및 제휴 업체 미팅	
하반기(상시)	제휴 계약 체결	
하반기(상시)	제휴 홍보 (제휴 결과를 총학생회 SNS 및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반기(상시)	제휴 아카이빙 (제휴 목록 정리)	

1. 사업 개요

- | | |
|-------------|-----------------------|
| 1) 사업 방식 | 총학생회 홈페이지 서비스 점검 및 개선 |
| 2) 사업 준비 기간 | 하반기(상시) |
| 3) 사업 일시 | 하반기(상시) |
| 4) 사업 예산 | ₩800,000 |
| 5) 담당부서/담당자 | 정보팀/하승중 |

2. 사업 추진 목적

학부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유지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학우들이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3. 사업 계획

1) 사업 수혜 대상자

학부 총학생회 홈페이지 이용자

2) 세부 사업 내용

- 홈페이지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사항 발생시 수정/보완
- SPARCS로부터 납품받은 총학생회 홈페이지 코드 검수 및 배포

4. 사업 예상 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하반기(상시)	개선점 탐색	
하반기(상시)	코드 수명 향상	가독성 개선

1. 사업 개요

- 1) 사업 방식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및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 2) 사업 준비 기간 하반기
- 3) 사업 일시 하반기
- 4) 사업 예산 -
- 5) 담당부서/담당자 비상대책위원장단/전성원

2. 사업 추진 목적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및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운영하기 위함.

3. 사업 계획

- 1) 사업 수혜 대상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및 중앙운영위원

- 2) 세부 사업 내용

2023년도 하반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 및 정기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준비하고 운영함. 정기 중앙운영위원회는 매달 둘째 주 및 넷째 주 화요일 21시에 개최함.

4. 사업 예상 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2023. 1. 9.	중앙운영위원회(1월 정기회)	21:00 개회

1. 사업 개요

- | | |
|-------------|----------------------|
| 1) 사업 방식 | 기업과 연계한 채용설명회·상담회 개최 |
| 2) 사업 준비 기간 | 하반기(상시) |
| 3) 사업 일시 | 하반기(상시) |
| 4) 사업 예산 | - |
| 5) 담당부서/담당자 | 집행지원실/김성원 |

2. 사업 추진 목적

기업과 연계한 채용설명회·상담회를 개최하여 취업에 관심있는 학우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고자 함.

3. 사업 계획

1) 사업 수혜 대상자

본회 회원

2) 세부 사업 내용

기업의 요청을 받아 채용설명·상담회를 개최함. 기업의 요청을 받아 채용설명·상담회 장소 대관, 홍보 등의 진행 과정에 있어 협조하고, 행사 당일 실무 인원을 파견함.

기업에서는 본교 발전재단으로 대관료를 기부금 형식으로 납부함. 학부 총학생회에서는 해당 금액을 발전재단으로부터 자치회계의 형식으로 지급받음.

4. 사업 예상 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하반기(상시)	채용설명·상담회 신청 접수	
하반기(상시)	채용설명·상담회 장소 대관 및 홍보	
하반기(상시)	채용설명·상담회 행사 실무 파견	당일

1. 사업 개요

- | | |
|-------------|-----------------------|
| 1) 사업 방식 | 총학생회 홈페이지 서비스 점검 및 개선 |
| 2) 사업 준비 기간 | 하반기(상시) |
| 3) 사업 일시 | 하반기(상시) |
| 4) 사업 예산 | - |
| 5) 담당부서/담당자 | 정보팀/하승종 |

2. 사업 추진 목적

학부 총학생회 홈페이지와 카이위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버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복구하여 서비스 이용의 질을 높이고자 함.

3. 사업 계획

- 1) 사업 수혜 대상자
 - 학부 총학생회 홈페이지 이용자
 - 카이위키 이용자
- 2) 세부 사업 내용
 - 서버 상시 모니터링 및 에러 발생시 긴급 복구
 - 서버 물리적 고장 시 수리 및 부품 교체
 - 카이위키 주기적 백업

4. 사업 예상 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하반기(상시)	서버 모니터링 및 복구	
하반기(상시)	카이위키 백업	자동화 예정

1. 사업 개요

- | | |
|-------------|------------------|
| 1) 사업 방식 | P/NR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
| 2) 사업 준비 기간 | 하반기 |
| 3) 사업 일시 | 하반기 |
| 4) 사업 예산 | - |
| 5) 담당부서/담당자 | 정책국/이규태 |

2. 사업 추진 목적

신생 P/NR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개선점을 파악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목표로 함.

3. 사업 계획

- 1) 사업 수혜 대상자

본회 회원

- 2) 세부 사업 내용

학교측에서 진행한 교수진 및 학생 의견조사를 참고하며, 가을학기 말에 재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년 동안 P/NR 제도가 끼친 영향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음.

4. 사업 예상 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하반기	전체 학생 설문조사 실시	

1. 사업 개요

- 1) 사업 방식 재수강 제도 개선 관련 설문조사 바탕으로 보고서 작성
- 2) 사업 준비 기간 하반기
- 3) 사업 일시 하반기
- 4) 사업 예산 -
- 5) 담당부서/담당자 정책국/이규태

2. 사업 추진 목적

현 재수강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개선점을 파악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목표로 함.

3. 사업 계획

- 1) 사업 수혜 대상자

본회 회원

- 2) 세부 사업 내용

2023년도 가을학기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수강 제도의 개선점을 찾음

4. 사업 예상 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하반기	보고서 작성	

1. 사업 개요

- 1) 사업 방식 타학교의 계절학기 개설 강의 현황 파악을 통한 본교의
계절학기 개설 강의 확대 추진
- 2) 사업 준비 기간 하반기
- 3) 사업 일시 하반기
- 4) 사업 예산 -
- 5) 담당부서/담당자 정책국/이규태

2. 사업 추진 목적

학우들의 계절학기 강의 개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현재의 계절학기 강의 개설의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본교의 현황과 타학교의 현황을 비교하여 개선점을 파악하고 계절학기 개설 강의 수 확대를 목표로 함.

3. 사업 계획

- 1) 사업 수혜 대상자

본회 회원

- 2) 세부 사업 내용

타학교의 계절학기 강의 개설 현황과 본교의 계절학기 강의 개설 현황을 비교 분석한 후, 강의 수 증가를 위한 개선점을 찾음.

4. 사업 예상 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하반기	타학교 사례 조사 및 보고서 작성	

1. 사업 개요

- 1) 사업 방식 총학생회 홈페이지 서비스 점검 및 개선
- 2) 사업 준비 기간 2024. 1.~2024. 2.
- 3) 사업 일시 2024. 3.~2024. 4.(예정)
- 4) 사업 예산 -
- 5) 담당부서/담당자 집행지원실/김성원

2. 사업 추진 목적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사전에 대응하여 학우들이 후보자에 요구하고 알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함.

3. 사업 계획

- 1) 사업 수혜 대상자
본회 회원
- 2) 세부 사업 내용
 - 출마 유력 정당에 미리 학생들이 요구하는 바 전달
 - 선거 후보자 초청 후 간담회 진행

4. 사업 예상 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2024. 1.~2024. 2.	정당 및 후보자 컨택	

1. 사업 개요

- 1) 사업 방식 해오름식 진행
- 2) 사업 준비 기간 2024. 1.~2024. 2.
- 3) 사업 일시 2024. 2. 23.
- 4) 사업 예산 -
- 5) 담당부서/담당자 문화팀/홍성혁

2. 사업 추진 목적

(해오름식) 매년 봄 학기 초에 시행하는 자치단체 출범식으로, 학부 총학생회 산하 자치기구들의 출범을 알리고 앞으로 1년간 진행할 사업들이 무사히 성공하기를 기원함.

(해오름식 현수막 게시) 학우들께 총학생회에 어떤 단체들이 있고, 각 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리기 위함.

(해오름식 중앙집행위원회 부스 운영) 학우들께 중앙집행위원회를 알리기 위함.

3. 사업 계획

- 1) 사업 수혜 대상자

본회 회원

- 2) 세부 사업 내용

- 리크루팅 홍보 및 국서 소개를 위한 콘텐츠 준비

4. 사업 예상 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2024. 1.~2024. 2.	컨텐츠 준비	

1. 사업 개요

- 1) 사업 방식 메가박스 대관을 통해 학우들에 여가 생활의 기회 마련
- 2) 사업 준비 기간 2024.1.~2024.2.
- 3) 사업 일시 2024년 2월 중
- 4) 사업 예산 -
- 5) 담당부서/담당자 문화복지국/박찬진

2. 사업 추진 목적

메가박스 단체 관람 행사를 진행하여, 방학 기간 중 학생들이 편의 높은 문화 행사를 진행하고자 함.

3. 사업 계획

1) 사업 수혜 대상자

단체관람 행사 참여자

2) 세부 사업 내용

- 메가박스 유성점의 1개관을 대여하여, 단체 관람 행사를 진행함.
- 영화 관람 가격과 팝콘 등 간식류의 가격을 지점과의 협의로 보다 낮은 가격에 관람할 수 있도록 함.

4. 사업 예상 타임라인

날짜	내용	비고
2024.1.25.~2024.1.31.	메가박스 유성점 컨택	
2024.2.1~2024.2. 2월 중	행사 세부 계획 준비 행사 진행	가독성 개선

Ⅲ.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계획

1

위원 명단

1. 위원 명단

이름	학번	소속 부서	직책
전성원	20220596	비상대책위원장단	비상대책위원장
최정흠	20220704	비상대책위원장단	부비상대책위원장
김성원	20230123	집행지원실	집행지원실장
오윤석	20190391	집행지원실	집행지원실원
송준서	20220359	집행지원실	집행지원실원
하승종	20200683	정보팀	정보팀장
이규태	20190440	정책국	정책국장
김예린	20230147	정책국	정책국원
윤서진	20210415	정책국	정책국원
윤대한	20210409	정책국	정책국원
박찬진	20220302	문화복지국	문화기획국장
홍성혁	20230841	문화팀	문화팀원
추도현	20190675	문화팀	문화팀원
강주흔	20220014	복지팀	복지팀장
박정호	20200258	복지팀	복지팀원
임란아	20220891	복지팀	복지팀원
박재은	20230281	재정사무국	재정사무국장
김민재	20230105	회계팀	회계팀원
한정현	20200692	회계팀	회계팀원
나규민	20230213	사무팀	사무팀장
조현준	20230725	사무팀	사무팀원
김지현	20210829	국제팀	국제팀장
이진우	20230574	국제팀	국제팀원
정구용	20230648	미디어홍보국	미디어홍보국장
신은지	20230377	미디어홍보국	미디어홍보국원

2. 비고 사항

최정흠 부비상대책위원장은 2024. 1. 23. 이후로 사퇴할 예정.

정구용 미디어홍보국장이 부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부호선 할 예정

1. 국서/TF 구조

1) 집행지원실

(1) 활동 요약

- 비상대책위원회 내부 모니터링
- 전체회의 · 국장회의 관련 사무 관장
- 비상대책위원회 내부 세미나 운영
- 의결기구 소집과 시행 · 서기에 관한 사무 관장
- (정보팀) 학생회비 납부에 관한 사무 중 학부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경우의 사무 관장

(2) 국서/TF 원 명단: 김성원, 정구용, 송준서, 오윤석

(3) 사업명

- 채용설명회·상담회 개최
 - 각종 사무 전산화
 - 총학생회 통합 ERP 개발
 - 4 월 총선 대응 사업
- 등.

2) 정책국

(1) 활동 요약

- 총장 간담회 등 학교 당국과의 소통
- 학사 제도 개편 등 정책 사업

(2) 국서/TF 원 명단: 이규태, 윤서진, 윤대한, 김예린

(3) 사업명

- P/NR 제도 도입 대응 사업
 - 재수강 제도 개선 사업
 - 계절학기 개설 강의 확대 사업
- 등.

2) 문화복지국

(1) 활동 요약

- 본회 문화 · 행사 사업에 관한 사무 관장
- 비상대책위원회 소관 문화 · 행사 사업 진행
- 외부 업체 제휴, 생활관 개선 등 복지 사업

(2) 국서/TF 원 명단: 박찬진, 강주흔, 홍성혁, 김성원, 임란아, 박정호, 이진우, 추도현

(3) 사업명

- 생활관 리모델링, 생활관 배정 알고리즘 개선, 생활관 주말 쓰레기 문제 개선 등 생활관 사업
- 체계적 관리 및 적극적 제휴 등 제휴 사업
- 해오름식
- 메가박스는 KAIST 가 점령

등.

3) 재정사무국

(1) 활동 요약

- 자동공제 미동의 신청, 학생회비 공제, 환급, 추가납부 등 학생회비 납부에 관한 총괄적인 사무 관장
- 학생회비 운용에 관한 사무 관장

-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결산 공고
- 비상대책위원회 예산안 및 결산 작성
- 총학생회실 사무 관장
- 장영신 학생회관 301 호 및 302 호 등 총학생회실 관리
- 상근 업무 운영
- 예산안 및 결산 심의 방식 개편
- 총학생회 산하기구 활동인증서 발급 시스템 개선

(2) 국서/TF 원 명단: 박재은, 윤서진, 조현준, 김민재, 나규민, 한정현

(3) 사업명

-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 의결기구 속기
 - 개인정보 관리 정교화
- 등.

5) 미디어홍보국

(1) 활동 요약

- 비상대책위원회 디자인물 제작
- 우편, 전자우편, FAX, SNS 등의 소통 창구 운영 등 본회의 대외 소통에 관한 사무 관장

(2) 국서/TF 원 명단: 정구용, 추도현, 신은지

(3) 사업명

- 총학생회 정기 평가 운영
- 온라인 채널 조직화
- 분기별 소식지 발행
- 찾아가는 총학생회

등.

6) 국제팀

(1) 활동 요약

- 국제 학생에 관한 사업 담당
- 비상대책위원회 소관 국제 사무 관장

(2) 국서/TF 원 명단: 김지현

(3) 사업명

- 국제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 식당 개선
- K-Supporters
- Korean Language Camp 개선
- 생활 도움 버디 신설
- 외국인 간담회 운영

등.

2. 조직도

